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복권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제과-362, 2021.08.12

### 질 의

-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 회 신

사업자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매대행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1248, 2021.09.27

### 질 의

- 질의인은 ○○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용역에 타기관(△△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총 연구기간 동안(1차년도 '20.7.1.~'21.6.30., 2차년도 '21.7.1. '22.6.30.)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용역 개시일부터 매월 정액의 정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함)

### 질의내용

-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타 기관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 회 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서면법령부가-5141, 2021.11.08

### 질 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하려는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 및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매입

하여 개발 관리 후 제3자에게 매각(이하 "본건사업)하는 경우로서

-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과 매각하기 전 까지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신청공사")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 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2.(질의에서 신청공사가 종전부동산의 개발 관리 등 업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본 경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 3.(질의2에서 신청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국가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회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사용하던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해당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이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당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손익뿐만 아니라 해당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영수익과 매각비용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해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해당부동산 개발·관리 등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부가-4560, 2021.09.23

### 【질의】

-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 1.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여부

###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거래에 대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골프장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